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대한민국 대전환 <b>스타 그 파</b> 티티 <b>프</b> 티
		배포일시	2021. 1. 4.(월) / 총 6매(본문6)	한국판뉴딜
담당 부서	주택기금과	담 당 자	·과장 한성수, 사무관 엄성열, 주무관 김지현 ·☎ (044) 201-3342, 3345	
보도일시		2021년 1월 5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4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위장전입·청약통장 매매·자격양도 등 부정청약 행위를 상시 점검하여 엄단해 나가겠습니다.

- 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 부정청약 의심(197건)·불법공급 의심(3건) 수사의뢰 -
- □ 국토교통부(장관 변창흠)는 2020년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대상 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, 위장전입, 청약통장 매매,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 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다.
  - 이번 현장점검은 2020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경쟁률,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, 부정청약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21개 단지 (서울 3개, 인천 4개, 경기 7개, 지방 7개)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.
- □ 이번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197건 부정청약은 유형별로 위장전입 134건, 청약통장 매매 35건, 청약자격 양도 21건과 위장결혼·위장이혼 7건이다. 또한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, 부적격·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하는 등 3개 분양 사업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이번 점검 과정에서 적발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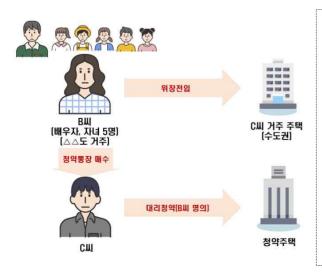
□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이 의심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.

## 【 주요 사례 】

1) 위장전입으로 수도권 주택에 특별공급 신청



- ○○도에 거주하는 유공자 유족 A씨는 수도권 내 고시원으로 주소 지를 옮기고,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으로 수도권 아파트에 청약 당첨, 당첨 직후 원 주소지로 주소이전
- ⇒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 혐의로 수사의뢰
- ○○도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유족 A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수도권 내에 위치한 고시원으로 단독 전입한 후 수도권 내 분양주택의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, 계약 직후 원 주소지인 ○○도로 주소지를 다시 이전하였다. 이에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이 의심되어 경찰에 수사의뢰하였다.
- 2) 당첨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매수하여 부정청약 당첨



- △△도에 남편, 자녀 5명과 거주중인 40대 B씨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C씨의 주소지로 단독 전입
- 수도권 아파트에 가점제로 청약 당첨.청약 및 계약 과정 일체를 C씨가 대리 진행
- ⇒ 청약통장 매매,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이 의심되어 수사의뢰

○ △△도에서 가족 6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B씨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C씨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수도권 내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되었다.

국토교통부는 현장 조사결과 C씨가 B씨를 대리하여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을 하였으며, 위임장 등에 서로 친족관계가 아닌데도 친족인 것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, 청약가점이 높아 당첨확률이 큰 B씨의 청약통장을 매수하고 C씨를 위장 전입시키는 방법으로 부정청약 당첨된 것으로 의심되어 경찰에 수사의뢰 하였다.

3) 위장결혼으로 부양가족을 늘여 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



- 2명의 자녀, 40대 동거남과 같이 거주하는 D씨는 자녀 3명을 둔 30대 E씨와 혼인신고하고, 주민등록을 합친 후 높은 가점으로 청약 당첨
- 당첨 직후, E씨와 자녀 3명은 원 주소지로 주소 이전하고 이혼
- ⇒ 위장결혼,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 청약이 의심되어 수사의뢰
- 수도권에서 자녀 2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D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한 달 전 자녀가 3명 있는 30대 E씨와 혼인하여 수도권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되었다.

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결과, E씨와 E씨의 자녀 3명이 모두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D씨의 주소지에 전입하여 당첨된 직후 원 주소지로 전출하고 이후 이혼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, D씨의 주소지에 D씨, E씨와 각각의 자녀 5명과 40대 F씨 등 총 8명이 전용면적 49㎡ 소형 주택에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등, 부양가족 수를 늘여 높은 가점으로 청약에 당첨되기 위한 **위장결혼 및 위장전입이 의심**되어 D씨와 E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 하였다.

4) 당첨자 명단 조작으로 가점제 부적격자를 불법 당첨



- G씨를 포함한 11명은 가점제 일반 공급에 부양가족을 허위 기재하여 높은 가점으로 가점제 당첨,
- 분양사는 가점제 당첨자 11명을 검증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추첨제 당첨 자로 명단 조작하고 분양계약 체결
- ⇒ G씨 등 11명과 분양사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
-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G씨는 결혼을 하지 않고 단독 세대주로 있는데도, 수도권 내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하면서 부양 가족 6명이 있는 것으로 허위 기재하여 당첨되었다. 가점제 청약 당첨자의 경우 당첨이후 사업주체가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신청내역이 적정한 지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나, 사업주체는 G씨를 부양가족 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추첨제 당첨자로 명단을 관리하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.

이에 국토교통부는 현장 조사에서 사업주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총 11명을 부정 당첨시켰으며, 11명의 당첨자 중일부는 주소지가 동일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, 사업주체와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불법공급을 한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보여 사업주체와 당첨자 11명을 모두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, 관할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하였다.

- □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부정공급 의심사례 3건에 대하여 **12월말에 수사의뢰** 하였다.
  - 수사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,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에 처해진다. 아울러 위반행위자가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되며,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된다.
- □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"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,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엄단해 나갈 것"이라며,
  - "특히 청약통장 및 청약자격을 양도하여 부정청약에 가담한 경우, 형사처벌, 계약취소, 청약자격 제한 뿐만 아니라, 장애인 또는 기초수급 대상자의 경우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이나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을 박탈될 가능성도 있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"고 밝혔다.
- □ 한편,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29일부터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 24개소(수도권 5개소, 지방 19개소)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현장점검에 착수하였으며,
  - 청약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불법이 의심되는 단지에 대하여는 즉시 현장점검에 착수하는 등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.
- 아울러,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사업주체에 대한 지도·감독을 강화

하도록 요청하였으며, 주택 관련 협회를 통해 사업주체의 자정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엄성열 사무관(☎ 044-201-334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